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11월 15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1.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조항을 시행일에 맞춰 일괄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 총 31개 조례 / 43개 조문(감사담당관 등 13개 부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2022.1.13. 시행에 맞춰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 총 31개의 조례에서 상위법을 단순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2021.1.12. 전부개정, 2022.1.13. 시행)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21.1.1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전부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조례안별 개정 내용으로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군·구의 경우 2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 이에 인용조문을 현행법 제16조에서 개정법 제21조로 개정하고 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하였음. 또한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현행 조례에 150명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는 개정하지 않았음.

현 행 법	개 정 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생략>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의 위임대상에서 구의회사무국장을 삭제하고 별표의 제2호가목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복직 사무를 삭제하였음.

현 행 법	개 정 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현행과 같음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②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②·③ 현행과 같음

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현행과 같음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제161조(공공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제154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	**제161조(공공시설)** ① ·②현행과 같음

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82조(회의의 질서 유지)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생략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생략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제126조(직속기관)** 현행과 같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현행과 같음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현행과 같음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현

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행과 같음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의회 인사권이 구청장에서 의장으로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개정되었음. 따라서 현행 조례의 구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삭제하였음.

현 행 법	개 정 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공무원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자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을 제정하였음.

· 주요 변경사항은 조례청구 가능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청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또한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자치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에서 70분의 1로 청구요건 또한 완화되었으며, 영등포구의회 소관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중 제21조(연서주민의 수)는 새로 제정할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해야하며 구청장 소관의 자치법규 입법에 대하여 규정한 현행 조례에서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 행 법	개 정 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

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④ 생략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④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 행 법	개 정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마. 생략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 마. 생략

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현행과 같음

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제161조(공공시설)** ①·②·③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⑥ 현행과 같음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2019년부터 계획하였던 사업들의 기반이 조성되어 구정 4개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410 호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조항을 시행일에 맞춰 일괄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 총 31개 조례 / 43개 조문(감사담당관 등 13개 부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단순 표현·자구의 변경은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로, 같은 조 및 제5조제1항 중 “보건소장·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을 각각 “보건소장·동장”으로 한다.

[별표]의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삭제〈1999. 8.16〉		
2.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삭 제〉	〈삭 제〉	〈삭 제〉
나.7급이하 지방공무원 소	「지방공무원법」제6조,제30조의5	
내전보	「지방공무원임용령」제7조,제26조	보건소장
다.〈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라.〈삭 제〉	〈삭 제〉	〈삭 제〉

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를 "지방자치법 제150조"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161조”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를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7조와 제139조”를 “제154조와 제156조”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에는「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에는「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17조 중 "같은 법 제4조의2"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2 및 제6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를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를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21조 ---------- ---------- ----------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 ---------- ---------- ---------- ---------- --- 18세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td><td>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

-- 보건소장·동장---------

----------.</td></tr>
<tr><td>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은 보건소장·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생 략)</td><td>제5조(위임사무) ① ------ 보건소장·동장----------
----------.
② (현행과 같음)</td></tr>
<tr><td>[별표]
<table><tr><th>사 무 명</th><th>근 거 법 령</th><th>수임기관</th></tr><tr><td>1.삭제〈1999. 8.16〉</td><td></td><td></td></tr><tr><td>2.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td><td></td><td></td></tr><tr><td>가.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복직</td><td>「지방공무원법」제6조,제30조의5,제63조,제65조,제27조,제60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7조,제26조</td><td>구 의 회 사무국장</td></tr><tr><td>나.7급이하 지방공무원 소내전보</td><td>「지방공무원법」제6조,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제7조,제26조</td><td>보건소장</td></tr><tr><td>다.소속공무원에 대한 승급</td><td>「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6조</td><td>구 의 회 사무국장</td></tr><tr><td>라.구의회 소속 별정직,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td><td>「지방자치법」제91조</td><td>보건소장
구 의 회 사무국장</td></tr></table></td><td>[별표]
<table><tr><th>사 무 명</th><th>근 거 법 령</th><th>수임기관</th></tr><tr><td>1.삭제〈1999. 8.16〉</td><td></td><td></td></tr><tr><td>2.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td><td></td><td></td></tr><tr><td>가.〈삭 제〉</td><td>〈삭 제〉</td><td>〈삭 제〉</td></tr><tr><td>나.7급이하 지방공무원 소내전보</td><td>「지방공무원법」제6조,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제7조,제26조</td><td>보건소장</td></tr><tr><td>다.〈삭 제〉</td><td>〈삭 제〉</td><td>〈삭 제〉
〈삭 제〉</td></tr><tr><td>라.〈삭 제〉</td><td>〈삭 제〉</td><td>〈삭 제〉</td></tr></table></td></tr>
</tabl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 ---------- ---------- ----------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3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42조 --. 1. ~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금액 2.·3. (생 략) ③·④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1. 지방자치법 제150조 ------ ---------- ---------- ---------- ---------- 2.·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61조----------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1조(위탁관리) 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와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3조와 제161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부터 제80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4조와 제156조------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61조---------- ----------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시기)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제출 전	3. ----------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 에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에는「지방자치법」제176조----------.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 및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지방자치법 제102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25조부터 제134조----------
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생 략)	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관할구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관할구역) ---------- 같은 법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대하여는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임용권자) ① ---------- ---------- ----------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지방자치법」 제19조---------- ---------- ---------- ---------- ---------- ---------- ---------- ---------- ---------- ----------.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 제19조---- ---------- ---------- ---------- ---------- ---------- ----------.
제21조(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	제21조(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9조----------

민이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의 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 ----------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조 및 제9조---------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조 ---------- ---------- ----------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5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등포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 ----------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무대예술 공연, 문화예술 행사 등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구민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 ④ (생 략)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법」 제15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인의 종류) ① (생 략)	제2조(공인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